

크라우드펀딩법 시행으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2015년 7월 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일명,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크라우드펀딩(증권형)’ 법제화를 통하여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신뢰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규제 완화	보완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신설 • 발행인 공시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 관련 금융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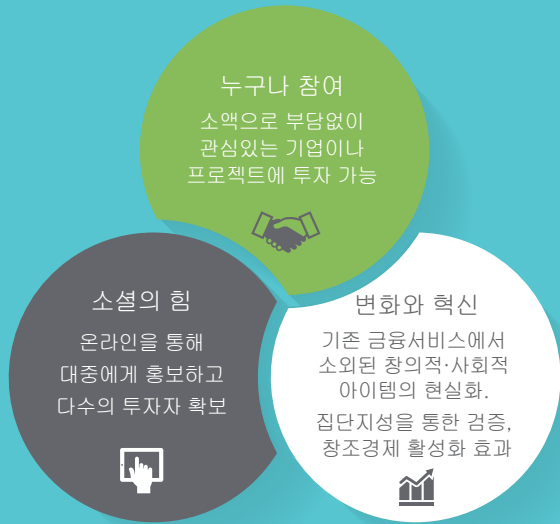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경과

- '13. 6. 12 :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15. 7. 24 :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포
- '16. 1. 25 :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함께 모여 꿈을 이루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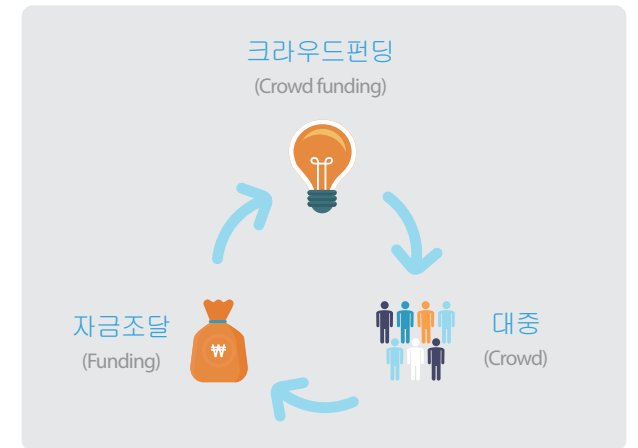
크라우드펀딩 관련 문의처

- 크라우드펀딩 제도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투자금융연금팀 T.02-2156-9796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T.02-3145-7606
- 크라우드펀딩 사칭 불법의심행위 신고(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팀 T.02-3145-8155

크라우드펀딩! 모이면 희망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이 있어도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화를 포기하는 창업기업들이 많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크라우드펀딩포털)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모아 이러한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입니다.
함께 모여 만드는 희망, 이것이 크라우드펀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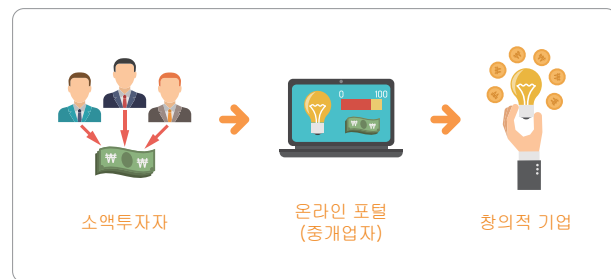
웹 2.0	빅데이터	크라우드펀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SNS 보편화 • 온라인상 능동적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지성 활용기반 • 소비자 니즈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젤투자가 편리한 새로운 플랫폼 등장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크라우드펀딩 : 대중(crowd)+자금조달(funding)

-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이
-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하여
-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자금모집방식에 따른 유형 분류

- ① 기부·후원형, ② 대출형, ③ 증권형(투자형)으로 구분가능

유형	자금모집방식	보상방식	주요사례
기부·후원형	기부금·후원금 납입	무상 또는 출시제품	문화·예술·복지, 아이디어 상품
대출형	대출	이자	자금이 필요한 개인, 사업자
증권형(투자형)	기업·프로젝트 투자	지분, 이익배당	창업초기 기업

* 본 안내자료의 크라우드펀딩은 증권형(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의미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조달하기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

-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 창업 후 7년 이내이거나
-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기존사업과 독립 회계)하는 자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은 창업 후 7년 이상 경과해도 가능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gambling·베팅업 등 제외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할 수 있는 증권

창업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 지분증권(주식)
- 채무증권(채권)
- 투자계약증권(특정 프로젝트 투자)으로 발행가능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한도

연간 7억원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의 장점

신생·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소액공모 대비 제출 서류 간소화

일반공모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신고서 (약 27종) 금융위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액공모 공시서류 (약 17종) 금융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 발행 조건, 재무 상황, 사업계획서 등 중개업자 홈페이지 게재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하기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

- 일반투자자 (②,③을 제외한 나머지)
-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 등 (전문엔젤, 벤처캐피탈 등)

	동일 기업당 투자 한도	연간 총 투자한도
일반 투자자	200만원	500만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1,000만원	2,000만원
전문 투자자	없음	없음

투자자 보호 조항 (자본시장법)

- 투자자 1인당 투자한도 제한
- 창업기업의 연간 자금모집한도 제한
- 발행기업 목표액 대비 모집액이 미달(80%)시 증권발행 취소
- 발행인 및 대주주 1년간 지분 매각제한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요건)

- 1,500만원 이하 : 100%(15년부터 3년간)
- 1,5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50%
- 5,000만원 초과 : 30%

* 확인방법은 중소기업청 고시 '벤처기업확인요령'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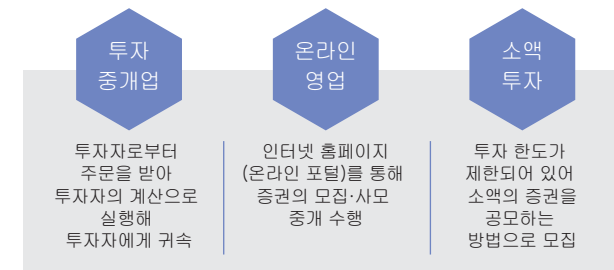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로 등록하기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에서 소액증권의 모집 및 사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는 자본금, 인적·물적요건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

* 기존 투자중개업자 대비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